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60 발의연월일: 2022. 1. 11.

발 의 자:노웅래·고민정·김병욱

김성원 · 김윤덕 · 김정호

김태흠 • 박홍근 • 오영훈

유상범 • 윤관석 • 윤미향

이수진(비) • 홍익표 의원

(14인)

제안이유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에 「환경정책기본법(당시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단법인격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1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자들의 회비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던 환경보전협회는 설립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위탁사업 등 비율이 약92%에 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 대변단체로 오인되어 기관 공공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고 의사결정이 회원조직체계에서 볼 수 있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정체성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고,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정부위탁사업의 인

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만 협회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 정적인 국가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 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등의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하며, 재원의 충당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 나. 환경보전에 관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 정함(안 제59조제5항).
- 다.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운영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실적과 예산·결산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도록 함 (안 제59조제6항).
- 라. 한국환경보전원의 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 함 (안 제59조제7항).
- 마. 한국환경보전원이 아닌 자가 한국환경보전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제9항).

법률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보전원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협회"를 "보전원"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경우 전단의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 교육의 강화·지워사업
-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등의 관리·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검사·평가·연구사업
-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사업 등을 지도·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

- 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

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3조(한국환경보전원의 회원·회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은 이 법이 시행 된지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두고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은 한 국환경보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 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59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 다.
-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 ·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안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 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 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 ② 보전원은----.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 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 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 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 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 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 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전단의 출연금 • 보조금의 지급 • 관리 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 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 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 사업
-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 수토지등의 관리·활용, 수변 생태계 복원,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 원사업
-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 · 검사 · 평가 · 연구사업
-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 • 개선 • 지원사업
-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 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 • 협력 • 지원사업
-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등으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 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 ⑨ 보전원-----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 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 ·사업 등을 지도·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 예산 및 사업실적 • 결산 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 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 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 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원 장을 제외한 임직원에 관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 되지 <u>아니한</u> 사항은 「민법」 ---<u>않은</u>--------재단법인-----

용한다. ----